

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안

의안 번호	9/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년 월 일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주민의 자치능력을 높여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자치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"평창군리개발위원회설치조례"를 폐지하고 "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"를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구성 (안제2조)

- 당연직 : 이장, 반장, 새마을지도자, 새마을부녀회장, 4-H회장
- 위촉직 : 마을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(5명이내)

나. 기능 (안제3조)

- 마을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결정과 추진
-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
-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
-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마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바. 조례·규칙심의회 : 제15회 평창군조례·규칙심의회('99.8.13)원안의결

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안

제1조 (목적) 주민의 자치능력을 높여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자치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마을에 리자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당연직 위원은 이장, 반장, 새마을지도자, 새마을부녀회장, 4-H회장이 된다.

③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이 5인 이내로 위촉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1. 마을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결정과 추진
2.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
3.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
4.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
5.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 또는 마을 대표자와의 소규모사업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
6. 그밖에 읍·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4조(위원장) ①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감사) ①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읍·면장이 위촉한다.

②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임기)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.

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.

제7조(회의)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 한다.

②정기회의는 매월 1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3조 제5호의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읍·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읍·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의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서기) ①위원회에서 서기 1인을 두며 마을담당공무원이 된다.

②서기는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보조 지원한다.

제9조(회계) ①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,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회계년도는 군의 회계년도를 따른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리개발위원회설치조례(조례 제 749호, 1982. 2. 16)는 이를 폐지한다.
- ③(경과조치) 평창군리개발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리개발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[별지서식]

리자치위원회의사대장

번호	일시	장소	참석위원	의결내용